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 ① 입소자의 정원은 71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입소가 가능한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입소가 가능한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전`후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전`후의 자로써 주무관청의 장이 입소의뢰한 자

제 2 조 (입소자 모집방법) 시설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1. 홍보모집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를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2. 참여모집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단체 모임의 참여, 협력병원의 자선활동 참여 및 재단과 연관 사업장 등의 자체적인 자선활동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관계기관 의뢰모집
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구청 관할내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의 의뢰, 기관 및 사회봉사활동 단체에서의 추천 혹은 의뢰에 의한 경우 입소절차를 밟아 입소자를 모집한다.
4. 연계모집
다른 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의료기관, 근무자 지인 등에서 의뢰한 경우 및 사회복지기구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소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5. 기타모집
위 각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현수막 게재, 지인소개 및 보호자의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입소희망자를 모집한다.

제 3 조 (입소시설이용계약)

- ① 입소시설이용계약의 목적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시설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수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운영하도록 한다.
- ② 입소시설이용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계약 및 기간
입소자의 입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설이용승인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마감일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도록 한다.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사망, 퇴소,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인정기간 만료와 같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시설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퇴소의사가 있을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중간퇴소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재계약
동 계약이 종료되는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제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반 시설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상담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퇴소요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되거나 해가 바뀌어 보건복지부가 고지한 장기요양급여의 금액의 변동, 장기요양인정 등급갱신, 식사재료비 변동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③ 시설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입소자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원인수인명과 생년월일, 입소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2. 계약기간
 3.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 월 입소 비용, 서비스 기간, 계약목적, 면회, 외출 및 외박, 입원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
- ④ 시설이용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설이용에 있어서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에 대하여 대표 신원인수인은 가급적 1명으로 정하고 입소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시설이용에 있어 입소계약서에 기재된 관련 비용이나 비 급여로써 지출한 비용 등의 입소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명이 변경되었거나, 신원인수인의 주소지, 연락처, 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
 5.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입소자의 건강, 생활, 이용 상의 문제를 문의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절차)

- ①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시설 3,4,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하도록 한다.
- ②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하면 건강보험공단직원의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등급을 판정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함으로 장기요양 신청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계획서를 수령하여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하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입소 전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실시하며 입소일 전까지 입소자의 건강 상 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입소 시 제출하도록 하며, 코로나 및 사스 등 중증 특수전염질환 발생으로 정부의 조치가 있을 시 그에 따라 입소 1일 전에 중증특수전염성 질환의 비 감염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입소 전에 시설에 제출한다.

제 5 조 (입소이용료)

-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을 받아 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이용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급여금액에 의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청에서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일반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전액 중 20%, 경감 이용자는 12% 또는 8%를 이용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입소계약서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월별 이용명세서는 매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 급여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비 급여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병원비, 약값 및 이·미용비 (입소자 및 보호자의 자의에 의하여 외부에서 이·미용사를 초빙한 경우)

4. 입소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5. 입소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의비 및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 등
 7.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③ 비 급여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 혹은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④ 입소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이 연체 시 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미납·연체금액에 대해서 입소대상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납부하도록 독려하며, 이는 독촉장 내용증명발송을 수차례 거친 후에 연체에 대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진행되거나, 3개월 내라도 상습적(3회 이상)으로 연체납부 될 시 독촉장 경고 조치실시하며 이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급능력의 불명을 증명하지 않은 채 3개월을 초과 연체할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연체 해결에 대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납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다.
- 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입소이용료가 변경되거나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으로 인한 등급변동으로 이용금액이 변경되거나 비급여 이용료(식재료비 등)의 비용이 변경될 때에는 입소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직접 구두상이나 유선 및 E-mail로 고지하여 금액의 변경을 알리고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금액변경에 대한 기록을 시설과 입소이용자나 신원인수인(보호자)가 각각 보관한 후 매월 변경된 금액을 입소이용명세서에 반영한다. 변경된 이용료는 1, 2월 알림장으로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제 6 조 (서비스제공)

- ①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1. 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2. 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4. 시설입소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시설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시설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근무 중인 직원이나 직원의 직계가족은 식사재료비의 일정부분을 감경해줄 수 있으며 금액에 대해서는 입소 시 작성하는 입소계약서에 반영하여 기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수록하며 한다.
 8. 시설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영혼구원 및 건전한 심신과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생활에 참여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타종교시설로 전소를 원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며 시설입소자는 보호자 인도, 기타 건강한 사고에 의한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한다.
- ②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유,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외상, 상처)관리, 축탁의 정기진료를 통한 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2.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3. 일상생활 서비스: ADL, IADL, 이동보조, 목욕, 면도, 배변 등
 4.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5. 프로그램 서비스: 언어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향기치료 등
 6. 취미활동 서비스: 시장놀이,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7. 특화프로그램: 비누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여행, 연극 등
 8. 각종 내, 외부공연: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유료공연단의 공연, 학교 및 영유아 단체의 공연,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간 공연 등
- 단, 시설 및 해당 프로그램 전문가의 섭외사정이나 입소자의 인지 및 신체상황에 따라 변경, 추가될 수 있다.

제 7 조 (특별 보호서비스)

- ① 시설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입소자본인이나 타 입소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 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를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3. 경관튜브 및 링거 바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등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4.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5. 신경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안정제 및 수면유도제 등의 약물적 안정치료의뢰
(단, 이 경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한다.)
 6.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특별격리실 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타 시설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격리실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병원으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3.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격리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아래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혹은 그 보호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 1인용 상급침실을 사용할 경우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비용
 2.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 사용
 3. 기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정한 비 급여항목 등

제 8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시설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기요양보험대상자

-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염성 질환여부를 판단하는 건강진단서 1부. (질환유무의 확인을 위해 입소 전 반드시 발급)
- 중증특수전염질환에 대한 미감염을 판단하는 진단서 1부. (입소 시 반드시 시설에 제출)
- 입소자 명의의 통장 및 도장.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 입소대상자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2. 일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 전염성 질환여부를 판단하는 건강진단서 1부. (질환유무의 확인을 위해 입소 전 반드시 발급)
- 중증특수전염질환에 대한 미감염을 판단하는 진단서 1부. (입소 시 반드시 시설에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제 9 조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입소자를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입소자 본인이 원할 경우,

(단, 입소자가 치매나 지적장애와 같은 인지능력에 장애나 병소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부모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 및 퇴소를 원할 때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자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폭력이나 배회 정도가 너무 심하여 수차례 억제나 약물처방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는 경우)

5. 의사의 판단 하에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자

6.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소이용료를 미납하고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에 대한 해명이나 지불 무능력을 증명할 서류 제출 없이 악의적으로 이용료를 연체 할 시

7. 외박(입원) 시 외박(입원)사유가 종료되었음에도 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15일이상 장기요양인정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에 의뢰하여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